-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7.4.18(수)
제259회 임시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7년 4월 9일

○ 회부일자 : 2007년 4월 11일

다. 상정일자 : 제259회 충청북도 임시회

○ 2007. 4. 18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곽한용)

가. 제안이유

○ 효율있는 기업 운영을 지원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을 뒷받침하고 민원인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험종별 처리기간을 일부 단축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식품첨가물검사외 13개 검사 1~2일 단축

3.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 이명우)

○ 본 조례안은 도민들의 보건향상 및 청정환경 보전을 위하여 각종 시험을 비롯한 검사를 의뢰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효율성 있는 기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종별 처리기간을 1일내지 2일간을 단축하여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개정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제2조제1항 관련)

시 험 종 별	처 리 기 간	시 험 용 검 체 소 요 량
의 약 품 등 검 사	15일	1. 포장단위 2개 이상 2. 정제 100정 이상 3. 정제 500g 이상
식 품 류 검 사	18일	1. 세균검사없는 항목:3개이상 (기본단위 : 개당 200g(㎖) 2. 세균검사없는 항목: 3개이상 (기본단위 : 개당 200g(㎖) 3. 용량검사있는 항목: 추가 3개이상 (기본단위 : 개당 200g(㎖)
식품첨가물검사	18일	1. 고체 : 200g 이상 2. 액체 : 500g(㎖) 이상 3. 기체 : 1kg 이상
식품의기구·용기 및 포장류검사	18일	동일제품 6개 이상 (두루마리 형태 포장지는 3M이상)
농·축·수산물의 잔류농약검사	18일	1. 곡류 : 1kg 2. 채소류 및 과실류 : 3kg 3. 축산물 및 수산물 : 1kg
먹는물(샘물)검사	12일 (여니시아균검사 28일)	1. 먹 는 물 : 4ℓ이상 2. 먹는 샘물 : 5ℓ이상
목욕수검사	7일	물 2ℓ이상
수처리제	14일	중량 500g
대기·소음·진동검사 및 공중이용시설 검사	23일	출장조사
하천수, 호소수, 오하수 분뇨, 폐수검사	12일	1. 물 4ℓ이상 2. 노말헥산, 페놀, 유기인계, 폴리 클로리네이티드바페닐 항목등 포함시 각 1ℓ유리용기 별도채수
침출수검사	14일	
폐기물검사	10일	1. 액상(함유량시험) : 3.5ℓ이상 2. 고상,반고상(용출시험):600g이상 3. 유기인,테트라클로르에틸렌,트리 클로로에틸렌 항목 등이 포함시 투색 경질유리 요기에 채취
유해화학 물질검사	15일	1. 포장단위 2개 이상 2.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검사결과 통지서 첨부
임상학적 세균검사	10일	1. 약물:20cc 이상 2. 포장:10개이상 3. 식중독:500g 이상 4. 대변:20g 이상 5. 소변:10cc이상 6. 혈 액: 5cc
토양오염도검사	20일	1. 토양유류시험 등 가. 토양 5g 채취 나. 메틸알코올 10㎖ 다. 30㎖ 용기 라. 0~4℃ 냉장상태 보관 운반 2. 토양시험용시료 500g 이상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별표1]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 (제2조제1항 관련)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험 용 검 체 소 요 량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험용검체 소 요 량
의 약 품 등 검 사	15일	1. 포장단위 2개 이상 2. 정제 100정 이상 3. 정제 500g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 품 류 검 사	18일	1. 세균검사없는 항목 : 3개이상 (기본단위 : 개당 200g (㎖)) 2. 세균검사없는 항목: 3개이상 (기본단위 : 개당 200g (㎖)) 3. 용량검사있는 항목 : 추가 3개이상 (기본단위 : 개당 200g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식 품 첨 가 물 검 사	20일	1. 고체 : 200g 이상 2. 액체 : 500g (㎖) 이상 3. 기체 : 1kg 이상	(현행과 같음)	18일	(현행과 같음)
식품의기구·용기 및 포 장 류 검 사	20일	동일제품 6개 이상 (두루마리 형태 포장지는 3M이상)	(현행과 같음)	18일	(현행과 같음)
농·축·수산물의 잔류농약검사	18일	1. 곡류 : 1kg 2. 채소류 및 과실류 : 3kg 3. 축산물 및 수산물 : 1kg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먹는물(샘물)검사	12일 (여니시아균 검사 28일)	1. 먹 는 물 : 4ℓ 이상 2. 먹는 샘물 : 5ℓ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목욕수검사	8일	물 2ℓ 이상	(현행과 같음)	7일	(현행과 같음)
수처리제	14일	중량 500g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대기·소음·진동검사 및 공중이용시설 검사	25일	출장조사	(현행과 같음)	23일	(현행과 같음)
하천수, 호소수, 오하수 분뇨, 폐수, 침출수검사	14일	1. 물 4ℓ 이상 2. 노말헥산, 페놀, 유기인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페닐 항목등 포함시 각 1ℓ 유리용기 별도채수	하천수, 호소수, 오하수 분뇨, 폐수	12일	(현행과 같음)
			침출수검사	14일	
폐기물검사	10일	1. 액상(함유량시험) : 3.5ℓ 이상 2. 고상,반고상(용출시험):600g이상 3. 유기인,테트라클로르에틸렌,트리클로로에틸렌 항목 등이 포함시 무색 경질유리 요기에 채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유해화학 물질검사	15일	1. 포장단위 2개 이상 2.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검사결과 통지서 첨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임상학적 세균검사	10일	1. 약물 : 20㏄ 이상 2. 포장 : 10개이상 3. 식중독 : 500g 이상 4. 대변 : 20g 이상 5. 소변 : 10㏄이상 6. 혈 액 :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토양오염도검사	20일	1. 토양유류시험 등 가. 토양 5g 채취 나. 메틸알코올 10㎖ 다. 30㎖ 용기 라. 0~4℃ 냉장상태 보관 운반 2. 토양시험용시료 500g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 (업무) ①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및 기타 전염성 질환과 집단 질병 발생에 대한A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식품위생 법에 의한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 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조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 수처리제, 세척제, 기타 위생용품 및 장남감,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토양·농약잔류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폐기 물·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 류수,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료의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지역 안의 보건·환경관련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제2조 (검사·시험의뢰)①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 이라 한다)에 검사, 시험, 분석, 감정 및 소분, 봉함(이하 “검사 시험 등” 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의 의뢰서 또는 신청서와 “별표 1”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